

광주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0가단53626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언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지인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일도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8.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19,881,8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C의 처이다.

나. 광주 서구 D아파트 E호(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는 C의 소유였다가 2017. 7. 14. 매매(2017. 6. 3.자)를 원인으로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은 2억 4,600만 원이다.

다. 광주 서구 G아파트 H호(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7. 14. 매매(2017. 6. 18.자)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은 2억 4,800만 원이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가단6204 판결 및 2019가단33593 판결에 기한 판결금채권, ②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가합210 사건 관련 채권, ③ 2016. 12. 13.자 및 2017. 2. 13.자 각 사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바,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1건물을 매각하고 받은 대금을 제2건물의 취득자금으로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증여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의 방법인 가액배상으로 519,881,8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전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취지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누락되어 있는바,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의 취소가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한편, 원고 주장의 증여일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도 이미 도과하였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원고 주장의 채권자취소권에 대해서 보더라도,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하는 것인바(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참조), 갑 제3호증, 을 제40, 43, 4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7. 16. 선고 2018가단6204 판결 및 2020. 1. 14.자 2019가단33593 판결에 기한 판결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가 2020. 9. 1. 위 각 판결금채권을 I에게 채권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한 사실,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가합210 사건에서 2022. 10. 13.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C이 원고를 피해자로 하는 2016. 12. 13.자 및 2017. 2. 13.자 각 사기죄를 저질러 C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는데, C은 2023. 5. 17.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회수제한신고 하에 손해액 6,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안에 관한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석